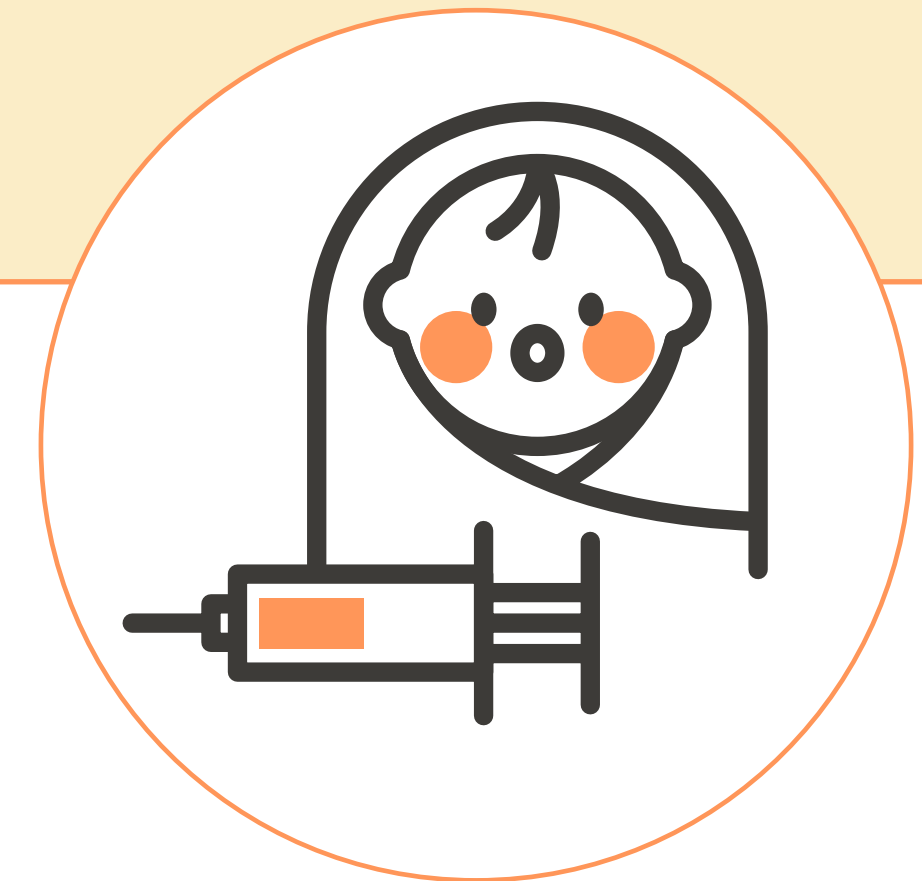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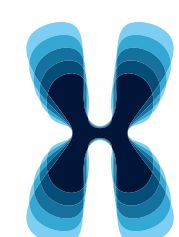


들어가며

소아응급의료는 긴급한 진료를 요하는 한편, 환자의 연령 및 발달 상태에 따른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므로 소아청소년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

응급환자가 응급의료서비스를 받기까지 물리적 이동시간은 생명 및 건강, 치료 후 회복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이번 호에서는 소아응급환자의 물리적 이동과 응급의료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한 공간적 의료접근성 분석 결과를 소개



소아응급의료 이용현황

■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을 통해 파악한 만 0~12세 미만 소아응급환자의 2017~2022년 의료이용 건수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영향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전년대비 증가
- 소아응급환자 수 및 요양급여비용 또한 유사한 양상

■ 물리적·지리적 접근성은 서비스 제공 지점부터 이용자까지의 물리적 거리 또는 이동시간을 의미

[표 1] 만0-12세 미만 인구수 및 응급의료 이용 현황

(단위: 명, 건, 명,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추세선
소아 인구 수	5,381,193	5,268,033	5,084,329	4,892,439	4,710,883	4,499,362	
청구건수	255,670	317,957	373,810	230,204	302,704	521,727	
소아 환자 수	192,947	234,649	275,155	189,932	244,468	401,192	
요양급여비용	67,296	92,848	118,198	90,724	133,492	225,575	

공간적 접근성 분석: 2SFCA 방법

■ 2SFCA 방법 (Two-step floating catchment area method)

- 수요지를 기준으로 임계거리 내에 도달 가능한 자원의 수요와 공급 비율을 측정하여 공간적 접근성을 산출
- 2단계의 연산절차를 통해 수요 중심지에서 임계 거리 내에 도달 가능한 자원의 수요-공급 비율을 공간적 접근성 지표로 정량화
 - (1단계) 공급자 위치를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 수요-공급 비율을 계산
 - (2단계) 수요자 위치를 중심으로 임계거리 내 도달 가능한 공급자의 수요-공급 비율을 합산

■ 소아응급의료 공간적 접근성 지표는 단위 지역의 소아인구 10만명 당 30km 이내에 도달 가능한 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의 소아청소년과 의사(전문의·전공의) 수로 설정

	수요	공급
지리정보	시군구지역(249개) 지리 중심점	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 주소지
인구인력 정보	시군구지역(249개) 소아 인구 수	소아응급의료 청구기관 소아청소년과 의사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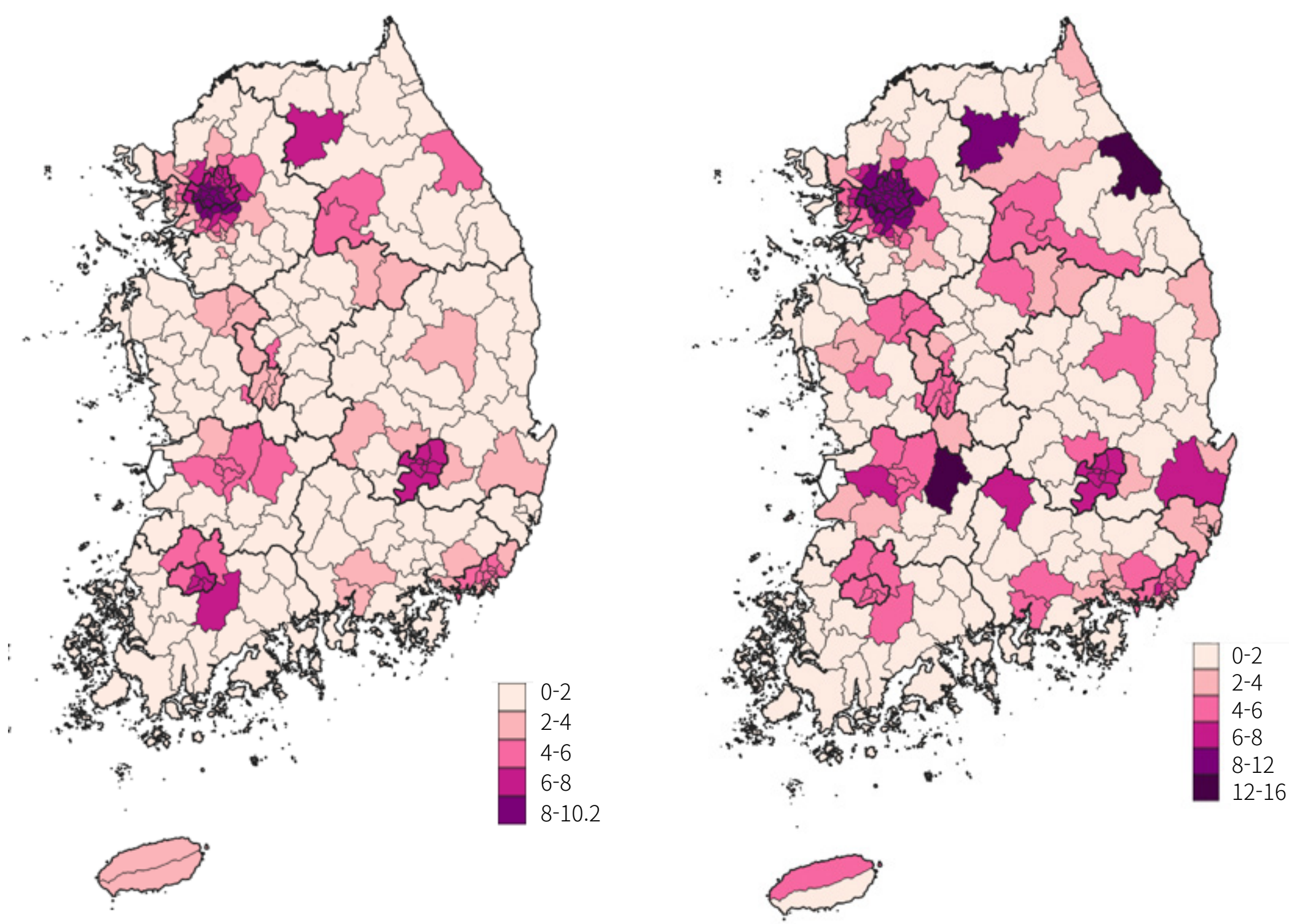
↓

지역별 의료접근성 산출(2SFCA 지표)

[그림 1] 소아응급 의료접근성(2SFCA 지표) 분석 개요

소아응급의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

-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력 감소에 따른 접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공의 지원 미달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7년과 2022년의 2SFCA 지숫값 비교
- 2017년 시군구 249개 지역의 2SFCA 지표 평균은 2.96, 표준편차는 2.87이었으며 2022년에는 평균 3.85, 표준편차 3.56으로 측정
- 2017년 지숫값이 10이상인 지역은 1개였으나 2022년에 22개 지역으로 늘어났으며, 지숫값이 0인 지역은 63개에서 54개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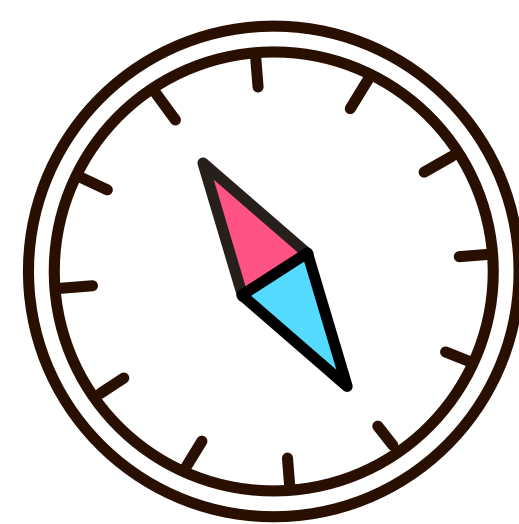
- 의료기관에서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한 인력 공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의 수를 늘린 반면 응급의료 수요에 해당하는 출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2017년에 비해 2022년 의료 접근성 지표 평균이 증가)

[그림 2] 소아응급 의료 접근성 지표(2SFCA) 단계도 - 2017년(좌), 2022년(우)

소아응급의료의 공간적 접근성 분석

나가며

- 적절한 시간내에 소아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료 기관 내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료 인력의 확보가 중요
- 소아응급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진료의 특성, 응급의료기관 및 대형병원의 지리적 위치,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 자원 수를 산출하고 이에 맞춘 정책 계획 수립과 추진이 필요





부패·공익신고

비실명 대리신고와 함께 해요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 명의로 신고 접수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봉인되어 신분 유출 원천 차단



비실명 대리신고 이용 방법

신고자
변호사 선임

변호사 대리신고
(신고자 인적사항 봉인 제출)

위원회 신고 접수
(위원회는 신고자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 불가)

- 내부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서 확인하세요.
- 비실명 대리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포함), ▲ 공익침해행위,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비실명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 신고자의 인적사항등을 공개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징계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398 또는 110